

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 (운영표준 제20조 관련)

절 차	내 용	수행주체
검증요청	· 사업자 등이 검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	사업자 등
↓		
검증팀구성	· 심사에 적합한 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	검증기관
↓		
사업 개요 파악	·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업 개요,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, 방법 등 파악	검증기관
↓		
리스크 평가	·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의 오류 가능성(리스크)을 평가	검증기관
↓		
검증계획 수립	·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현장 검증 및 문서 검토 등의 계획을 수립	검증기관
↓		
검증실시	· 문서를 검토하고, 문서와 현장 간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현장 심사 실시	검증기관
↓		
검증결과 품질관리	· 검증 내용에 대해 검증기관에서 자체 검토를 실시	검증기관
↓		
보고서작성	·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검증의견을 확정하고 검증보고서 작성	검증기관
↓		
보고서 제출	· 사업자 등에게 검증보고서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검증기관을 통해 산림탄소센터장에게 검증보고서를 제출	검증기관